

#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신현옥(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1. 머리말

이 글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이 내각 산하에 설립된 이후 남북 간 저작권 교류의 변화 양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01년 저작권법 제정, 2003년 베른협약 가입에 이은 저작권사무국 신설 등 북한의 저작권에 관한 일련의 움직임은 남북 저작권 교류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저작권사무국의 설립은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당사자는 물론 저작권 승계자와 관련된 문제, 북한에서 흔히 있는 공동 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 주체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남북한이 합법적인 저작권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북한 저작권사무국 설립으로 남북 간 정상적인 저작권 유통의 길이

열리자 2005년 3월, 남한의 통일부는 ‘북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안내 문’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 시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 제출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저작물 무단 사용은 침해에 대한 보상 처리, 정식 계약 체결에 따른 과거 불법 사용에 관한 합의 등의 과정을 통해 정리되었고, 부득이하게 불법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일부의 경우는 남한의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일 남북 저작권 교류의 성과를 눈으로 접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방영되는 북한과 관련된 TV 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남한의 TV 뉴스시간에 방영되는 북한 관련 영상은 조선중앙TV의 화면을 남한의 각 방송사들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의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을 비롯해 『황진이』, 『서산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주몽』 등 다양한 북한 작가의 소설이 출판되고, 『황진이』의 작가인 북한 소설가 홍석중의 이용 허락을 받고 남한에서 제작된 송혜교 주연의 영화 <황진이>가 상영되었으며, 북한 노래를 남한의 대중가수들이 부른 음반 <동인>이 출시된다거나, 백두산 사진을 담은 남한 우표가 발매되고,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담은 KTF의 월드컵 소재 CF가 방영된 것은 모두 남북 저작권 교류의 결실이다.

---

1) 침해에 대한 보상 처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홍명희의 『임꺽정』을 들 수 있으며, 정식 계약에 따라 과거 불법 사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예로는 남한의 각 방송사들의 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사용이 있고, 법적 조정의 사례로는 북한 작가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를 꼽을 수 있다. 한편, 북한 사회과학원, 고려의학 과학원에서 발행한 『조선유적유물도감』과 『향약집성방』을 비롯한 한약 관련 번역서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 자체가 창작자의 권익은 물론 사용자의 편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고 저작권 교류 역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임을 감안할 때, 남북 저작권 교류는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남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사업이자 경제교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남북의 활발한 저작권 교류가 남북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판단에서 저작권사무국 설립을 정점으로 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북한의 변화와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과 이후의 남북 저작권 교류의 변화 양상을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북한 저작권사무국 설립 과정

북한은 헌법과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74조는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sup>2)</sup>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1년 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2)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집』(평양: 법률출판사, 2006), 9쪽.

3) 전영선, “남북 저작권교류의 현황과 전망,”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봄호, 140쪽.

제5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13조: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7조: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제43조: 출판지도 기관과 문화지도 기관, 과학기술지도 기관은 저작권 사업에 필요한 대리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 저작권법 제5조는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13조는 사유 재산으로 저작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16조와 제17조는 저작권의 주체 문제를 밝히고 있으며, 제43조는 저작권 관리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74년에 이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입<sup>4)</sup>한 바 있으나 저작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는 저작권이 그 속성상 사유재산제도를 전제하기에 ‘자본주의와 가

---

4) 남한은 WIPO에 1973년부터 옵서버로 참여하다가 1979년 3월에 정식 가입했다.

까운 권리'라 판단해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 자체를 국가가 관리했기에 저작권 보호 개념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게 되고 북한에서도 저작권이 실리를 가져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작권을 달리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당시 “남북 간 저작물 직거래 관행이 거의 없어 중국이나 일본의 중개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와중에서 이중 계약이나 인감 위조 등의 행태가 벌어지는 상황”<sup>5)</sup>이 초래되자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1999년 7월 5일 북한의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이 지었거나 부른 가요에 대해 남한에서 왜곡·도용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sup>6)</sup> 2000년 1월에 남한의 도서출판 삼성당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성 산하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출판권 양도 및 공동출판에 합의”<sup>7)</sup>했다고 밝히자 2000년 3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모략, 날조극이라며 “삼성당에게 저작권, 출판권 침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sup>8)</sup>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2001년 4월에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4월에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sup>9)</sup>에 가입한 후, 이듬해인 2004년 4월

---

5) 이재완,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통권 51권, 가을호 (2000), 35~36쪽.

6) 전영선, “남북 저작권교류의 현황과 전망,” 137쪽.

7) 『대한매일』, “北 출판 도서물 南서 출간 추진,” 2000년 1월 22일.

8) 『로동신문』, “음모군들의 허튼 모략선전,” 2000년 3월 9일; 『조선신보』, “출판물 계약 독점체결 소문은 모략,” 2000년 5월 31일.

9) 베른협약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국민 대우의 원칙

에 저작권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을 내각 산하<sup>10)</sup>에 개설했다.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 사업을 지도·통제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저작권법 제43조 “출판지도 기관과 문화지도 기관, 과학기술지도 기관은 저작권 사업에 필요한 대리 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21조 “재산권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남한을 포함해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해오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위임과 저작권사무국 자체의 공증까지 담보하고 있어서 남한의 이용자들은 이곳만 통하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해 저작권사무국이 2005년 3월에 남한 정부에 보낸 ‘저작권 교류 조건에 관한 통지’를 남한 당국이 수용

---

과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이 어울려 ‘조화와 통일’이라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목적에 부합되는 국제 협약이다.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1), 178쪽 참조. 한편 남한은 1996년 8월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 10)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북한의 저작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출판지도국 관권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베른협약 가입 이후, 노동당이 북한의 대표하는 기구이기는 하나 대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을 느끼고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신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04년 11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에 가입한 후 저작권 관련 사업을 국제적 수준에서 벌여나가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비해왔으며, 그 결과 저작권사무국이 발족됐”으며, “이전에는 도서출판물을 비롯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기관이 외국의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저작권 사업을 추진했으며, 외국과 출판계약은 출판지도국 등 해당 국가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 출판물이 무단 복제되는 데 대한 대응을 주동적으로 벌여나가지 못했다며 사무국 개설로 저작권 양도계약의 심의와 승인이 일원화됐다”라고 밝힌 『조선신보』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함에 따라 남북 저작권 교류는 불법 사용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북 합의에 의한 합법 사용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통지와 남한 통일부의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사무국 <통지서>, 2005.3.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한에서의 우리 저작권의 리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남한 통일부 입장 표명

① 통일부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 2005.4.19.

“북한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 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앞으로 우리 부는 북한의 금번 통지사항을 반영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임.”<sup>11)</sup>

②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명의 <안내문>, 2005.4.20.

“앞으로 북한의 각종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상영 등 이용하시려는 분은 북한 저작물 반입 또는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시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어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고 남한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 저작권 교류는 일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11) 통일부, “남북 저작권교류 절차에 북한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보도자료, 2005년 4월 19일.

### 3. 북한 저작권사무국 설립 전후의 남북 저작권 교류 사례 비교

#### 1)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의 남북 저작권 교류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남북 저작권 교류는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그 이전까지 북한의 저작물은 국가보안법의 대상으로 남한 내의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되었기에 저작권을 논의할 계제가 되지 못했다. 다만 고대사나 국학 관련 분야에서 불법적인 영인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sup>12)</sup>

대부분의 북한 저작물은 공식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인 1990년까지 “일종의 무단복제 형태로 50여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300여 종류의 책으로 출간되었으며, 음반은 1,000여 곡의 남북·월북 작사·작곡자들의 작품이 원곡 그대로 또는 개작·개사되어 유통”<sup>13)</sup>되었다.

1991년 이후 남북 저작권 교류는 출판물과 영상물에 한정되어 진행

- 
- 12)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의 북한의 저작물은 대부분 분단된 남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저작권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단 사용되었다. 이 같은 무단 사용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저작권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 사용을 인지하고 언제든지 정상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형, 둘째, 남북의 특수한 관계를 악용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유형, 셋째, 저작권을 위임받은 단체인 양 행세하는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브로커들과 사기계약을 맺고 무단 사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유형, 넷째, 통일운동 차원에서 북한을 알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저작물 출판을 감행했던 유형이다.
- 13) 조수선, “남북한 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에 관한 일 고찰,” 『2000 봄철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한국언론학회, 2000), 352쪽.



되었는데,<sup>14)</sup> 출판물의 경우에는 1992년 남한의 여강출판사가 북한의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와 출판계약을 맺은 『리조실록』을 시작으로 같은 출판사의 『동의보감』, 한국사진학회와 조선사진가동맹중앙위원회가 공동 출판 계약을 체결한 『렌즈로 본 조국』, 남한의 누리미디어가 중국의 고려민족문화연구원을 통해 『고려사』, 『필만대장경』, 『발해사연구』, 『동국이상국집』 등의 북한 고문헌 번역본을 수입해 출판한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영상물의 경우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저작물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 영화가 반입되어 TV로 방영된 것은 1998년 9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SBS)가 최초의 사례이다. 같은 해 10월 <임꺽정>(KBS), <온달전>(MBC)이 연이어 방영되었고, 2000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길동>(SBS), <사랑 사랑 내 사랑>(MBC)이 특별 편성되어 방송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내 고향>, <신혼부부>, <우리 렬차 판매원>, <기쁨과 슬픔을 넘어>, <봄날의 눈석이>,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 등이 상영되기도 했다.<sup>15)</sup>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남북의 저작물 교류 협력은 진행되어왔지만 저작권과 관련한 갈등도 늘 내재해 있었다.

---

14)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에 북한의 출판물과 영상물은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대외영화합작사, 목란비디오사,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반입되어 출판 또는 방영되었다.

15) 이주철, “남북 영상·방송 교류의 현황과 전망,” 『남북 저작권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2005), 81쪽 참조.

<표 1> 남북 저작권 교류 경과: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

일자	내용	비고
1988	월북 작가 해금조치에 따른 출판권 보호 차원의 저작권 문제가 제기됨	-
1991.12.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상호 저작권 보호 조치 실시 합의	16조에 출판보호 분야 교류협력 규정
1992	조명암(조령출) 500곡에 대한 저작권 회복	-
1992.1	여강출판사 『리조실록』 출관계약	-
1992.5.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
1993.11	『리조실록』 관련 여강출판사 이름출판사를 상대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원고 1차 승소
1994	여강출판사 『동의보감』 출관계약	-
1996.8.21	남한 베른협약 가입	-
1998	한국사진학회 『렌즈로 본 조국』 남북 공동 출판	-
1998	누리미디어, 북한 『고려사』, 『팔만대장경』, 『발해사연구』, 『동국이상국집』 등의 고문헌 CD롬 출간 보급	북한 적법성 인정
1998.9	SBS 북한영화 <안중근 리등박문을 쏜다> 방영	-
1998.10	KBS <림격정> 방영	-
1998	영화 <림격정> 관련 소송	신청기간(저작권 소재 입증 불가)
1998.12	신상옥 감독, MBC 방영 <불가사리> 저작권 관련 소송	-
1999.7.5	북한, 월북 작가 음악에 대한 저작권 주장	-
1999.10	남한 북한의 위성방송(조선중앙TV) 수신 허용	-
2000.10	남한 출판사 간 분쟁에서 북한 출판지도국 명의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판권 양도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확인서 제출	남한 법원에서 북한의 문건 공식 인정
2001.3.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채택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
2001.4.5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저작권법 공포	-
2003.1	『조선향토대백과』 편찬 출판	-
2003	부산국제영화제 북한 영화 6편 상영	-
2003.4.28.	북한 베른협약 가입	『조선신보』 보도

자료: 전영선,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127~129쪽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도움을 받아 보완한 것을 인용했다.

## 2)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의 남북 저작권 교류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 남북 간 합의로 진행된, 즉 공식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지불이라는 절차를 밟은 저작권 교류는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낳았다.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진행되었던 저작권 교류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눈에 띄는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합의를 체결한 출판물을 필두로 영상, 음악, 광고, 사진 등 다양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출판물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분단 이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물의 저작권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역사소설, 고문헌 번역 서적의 출판이 바로 그 예이다. 특히 역사소설의 경우 『임격정』, 『황진이』와 같은 작품은 남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소설의 출판은 월북 작가의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모두가 역사소설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현대소설이 문학작품을 인민 교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체제 찬양적인 내용<sup>16)</sup>

---

16) 역사소설도 동일하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소설처럼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아 남한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09년 2월 7일 통일부는 1945년 해방 전후부터 1951년 한국전쟁까지를 다룬 장편소설로 북한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 『개마고원』에 대해 김일성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과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부분 등 총 190쪽 중 40여 쪽에 대해 삭제·수

이 많아 대부분 남한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수 자료로 묶여 있어 출판이 쉽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역사소설만큼이나 남한에서 활발하게 출판되는 것이 고문헌을 번역한 저작물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체제 특성상 고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국가에서 권장해 진행해왔다. 남한보다 먼저 완역한 『리조실록』을 비롯해, 방대한 분량의 『비변사등록』이나 『동의보감』, 『의방유취』와 같은 동양의학 서적의 번역작업을 일찌감치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번역이 원전을 왜곡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출판사들이 선호해 다양한 출판이 이루어졌다.

소설, 번역서와 함께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남한에서 출판된 북한 아동문학이다. 정치색이 배제된 북한의 창작 아동 문학은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저작물이기에 많은 작품이 남한에서 출판되었다.

월북 작가의 작품 또한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새롭게 정식 출판되고 있다. 1988년 남북·월북작가에 대한 해금조치로 이미 남한에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이 없이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이 이 작가들의 저작권 상속인을 확인해 통보함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맺고 재출판하게 되었다. 이는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리가 배제되었던 홍명희를 비롯한 백석, 한설야, 이용악, 조령출(예명 조명암), 박팔양, 최승희 등 월북 문인, 예술가들의 권리를 찾아 이들의

---

정해야 출판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소설 『개마고원』은 1956년 북한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출판해 학자들의 연구용 등으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1989년 국내 다른 출판사에서 원본을 그대로 출간한 적이 있던 작품이다. 『연합뉴스』, “北소설 개마고원 국내출판 어렵다,” 2009년 2월 9일 참조.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예라 할 수 있다.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된 이듬해 2005년 5월 7일 홍명희의 『임격정』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19일 백석의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북한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출판권이 양도되어 공식 출판된 작품은 장단편 소설 58편, 고문헌 번역서 26편, 전설집 8편, 동화 36편, 시 96편(백석 시집 제외), 의학서적 1편, 역사서 3편에 달한다.

## (2) 방송

현재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서 조선중앙TV 화면을 인용해 뉴스로 보도하거나 북한관련 프로그램에 북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모두 북한과 저작권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 방송사들은 전 세계 통신사 및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면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북한 화면을 쓰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방송영상을 포함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방송사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sup>17)</sup>하기 전까지 각 방송사들은 임의로 조선중앙TV 화면이나 영화 영상 등을 사용해왔다. 이에 경문협이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의 위임에 따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화된 합의를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후 정당한 사용을 재차 요청하자 이때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

---

17) 남한의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남북 저작권 교류의 대리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문협이 각 방송사들에게 북한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을 요청하자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경문협이 맺은 저작권 관련 합의서가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합의라고 주장하며 무단 사용을 지속한 바 있다.

로 북한 영상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방송을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국인 KBS, MBC, SBS, EBS, OBS와 케이블 방송사인 MBN, YTN, KTV가 있으며 방송사 이외에 통신사로 연합뉴스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북한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

### (3) 영화

정식으로 북한 작가의 작품 사용 허락을 받아 남한에서 영화로 제작된 것은 영화 <황진이>가 최초의 사례이다. 북한 작가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가 남한에서 출판되어 큰 호응을 얻자 2005년 5월 5일 남한의 영화제작사 씨즈엔터테인먼트가 작가 홍석중에게서 소설 『황진이』의 각색권을 양도받아 영화로 제작했다.

영화 제작 당시 남한의 제작사는 북한의 관계자들에게 개성 현지 촬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다만 북한의 영화 제작팀이 대신해 촬영한 개성 박연폭포 장면을 제공받았으며<sup>18)</sup> 금강산 현지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3년 여의 제작 과정을 거친 영화 <황진이>는 장윤현 연출, 송혜교·유지태 주연으로 2008년 6월 6일 개봉해 1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외에 하나로텔레콤이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3D 애니메이션 <계으른 고양이 덩가>와 <뽀로로>를, 코아필름이 북한 조선4·26아동 영화촬영소와 <왕후심청>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

18) 북한 영화제작팀이 촬영한 개성 박연폭포 장면은 영화에서 사용되지 못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화면을 제공받았다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 (4) 음악

남북 간 음악 저작권 교류의 대표적인 예는 북한 노래를 최초로 저작권 계약을 맺고 남한의 대중가수들이 부른 통일 음반 『동인』이다. 『동인』은 지난 2006년 4월 30일 (주)UB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소속 작가의 노래인 <반갑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녀성은 꽃이라네>, <김치 깎두기 노래>, <아직은 말 못해>, <우리는 하나>, <휘파람>, <자장가>, <생이란 무엇인가>(이상 10곡)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제작한 앨범이다.

통일음반 『동인』에는 마야, 바이브, JK김동욱, 베이비복스 리브 등 남한의 대중가수들이 참여했으며, 음반 판매 이외에도 방송, 노래방, 컬러링 등으로 사용되면서 추가적인 저작권 수입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음악 저작권 교류 사례로는 2005년 6월 개봉된 영화 <간 큰 가족>에 북한 음악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가 사용된 경우와 2007년 남한 KBS교향악단이 북한의 교향악곡 <아리랑>을 일본 공연에 맞춰 10월 2일과 3일 양일간 한시 계약을 맺고 사용한 예가 있다.<sup>19)</sup>

#### (5) CF, 사진

광고계 최초로 북한과 저작권 협의 후 제작한 CF는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제일기획이 제작해 2006년 6월 1일부터 방송된 KTF CF

---

19) 이 외에도 남북한 직접 교류의 사례는 아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의 금강산가극단이 제작한 음반 <비상>(2006년), <조선민족기악곡집: 소통>(2007년), <민족목관악기 선곡집 '들판에서'>(2009년)가 남한에서 출시된 예가 있다.

<“생각을 이동하라”: 북의 진실 편>이다. 이 CF는 2002년 6월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의 16강전을 녹화 중계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최금동)의 실제 육성 원음을 사용한 것으로, 경기를 보는 북한 가족이 남한을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 남북이 하나의 형제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모델로 기용된 경우는 있지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제작된 것은 KTF CF가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사진의 경우 대표적인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사례로는 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우표에 북한 사진을 사용한 것과 무용가 최승희의 미공개 사진 9장을 북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북한 인민기자 김용남의 사진 <백두산 삼지연>, <백두산 형제폭포>를 저작료를 지불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표에 사용했고, 후자의 경우는 무용가 최승희의 저작권 상속자인 조카 최호섭과 조선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명의의 동의로 <장고춤>, <부채춤> 영상 저작물과 함께 사진 자료 9장도 함께 사용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앞으로 영화, 무용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 남북 간 저작권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사무국 설립은 출판, 방송,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저작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표 2> 남북 저작권 교류 경과: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

일자	내용	비고
2004.6	북한 저작권사무국 신설, 출판지도국 관권처에서 위상을 격상해 정무원 직속으로 개편	-
2004.6.24	남한 WCT 가입	온라인저작권 보호
2005.2.20	홍석중, 남측 저작권 불법도용 문제 제기	-
2005.2.21	사계절 출판사 저작권 체결의사 표명	-
2005.3.15	북한 작가 홍석중이 <림격정>의 저작권 상속자이며 소설 <황진이>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문제를 남한의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위임함	홍석중
2005.3.15	북한 저작권사무국, 북한 저작권의 불법 이용에 대한 조사와 배상 사업 및 저작재산권 관리 사업을 경문협에 위임함	저작권사무국
2005.4	통일부, 북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안내문 발표,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 제출	-
2005.4.29~5.6	진주국제영화제 북한 영화 상영	홍콩 고선필름을 통해 수입
2005.5.7	소설 '임격정' 저작권료 합의 및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 영화 계약	-
2005.7.20	최명익의 조카 최항식, 최명익의 장편소설 <서산대사>의 출판 권한을 자음과모음에 위임함	최항식 (최명익 조카)
2005.10	남한 판도라 TV 북한 방송물 인터넷 서비스	내나라비디오
2005.11.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북한 『동의보감』의 저작권이 보건부 동의원에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이나 남측에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줌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
2005.11.20	림종상, 장편역사소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출판 권한을 자음과모음에 위임함	림종상
2005.12.20	저작권사무국,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비롯해 소설과 도서의 출판 권한을 자음과모음에 양도했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6.4.17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성으로 방영되는 TV방송영상물에 대한 남한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 사업을 경문협에 위임함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6.4.30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북한 노래 10곡을 경문협에 위임해 UB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확인서를 발급함	저작권사무국
2006.5.2	조선영화수출입사, 위성TV로 방영된 영화에 대한 남한지역에서의 저작권보호 사업을 경문협에 위임함	조선영화수출입사
2006.5.2	평양출판사, 『주몽』, 『고구려의 새벽』을 남한 자음과모음 출판사에서 3년 동안 출판하는 데 대한 작가 김호성의 동의서를 발급함	평양출판사
2006.5.2	저작권사무국, 저작권자의 동의 아래 『주몽』, 『고구려의 새벽』을 남한 자음과모음 출판사에 3년 동안 양도했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6.5.5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 북한 측 영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권리를 경문협에 위임함	저작권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
2006.5.18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일기획이 조선중앙TV의 방송원(최금동)의 육성녹음 이용에 동의함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7.9.1	조선영화수출입사, 위성TV 방영되는 북한의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등의 저작권 관리 기관으로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KBS, MBC, SBS 계약 동의서 발행	조선영화수출입사
2007.9.1	조선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최승희 사진 9매와 동화상자료(부채춤, 장고춤) VCD 1장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함	저작권 상속자는 최승희의 조카 최호섭
2007.9.3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성방송용 방송영상에 대한 저작권기관으로 경문협의 KBS, MBC, SBS 계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발행	-
2007.9.5	저작권사무국, 최승희 사진 9매와 동화상자료(부채춤, 장고춤) VCD 1장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저작물의 사용권을 경문협에 양도함	저작권사무국
2007.9.7	저작권사무국, 경문협과 KBS, MBC, SBS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북측 저작권의 동의를 있었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7.9.25	저작권사무국, 저작권자가 속한 기관의 동의하에 KBS교향악단에서 복측 관현악 <아리랑>의 저작물의 사용권을 양도했음을 확인함	저작권사무국
2007.9.27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부장 최근삼, KBS 교향악단에서 복측 관현악 <아리랑>의 저작물 사용권 이용에 대해 동의함	조선음악가동맹
2007.11.1	조선문화보존사, 누리미디어와 출판사의 『조선유적유물도감』(20권) 저작물 이용에 대해 항의함	조선문화보존사
2007.11.1	『조선유적유물도감』(20권) 저작권이 조선문화보존사에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조선문화보존사
2007.11.19	저작권위원회에서 ‘최승희 <장고춤> 동영상’ 외 1건의 영상저작물을 등록함.	저작권위원회
2008.12.25	저작권사무국, 월북작가 10명이 남긴 작품의 저작권을 경문협에 일괄 위임	저작권사무국

자료: <표 1>과 같은 자료.

#### 4. 남북 저작권 교류에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설립이 미친 영향

저작권사무국 설립은 남북 저작권 교류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왕래는 물론 통신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의 사용자가 북한의 저작권자를 찾아내 이용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동창작의 관행이 흔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 남북 간 저작권 교류는 불법 출판, 저작권 사칭 등의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한 것이 바로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 저작권 교류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된 이후에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이는 저작

권사무국 설립이 남북 저작권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저작권 교류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

북한 저작권사무국 설립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첫째, 남한 내 불법 북한저작물의 감소와 침해에 대한 처벌근거가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저작권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된 이후 북한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고, 남한의 정부 당국 또한 저작권사무국의 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북한 저작물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북한 저작물의 관리 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남한 내 불법 북한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저작권 주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다. 저작권사무국은 북한 저작권법에 명시된 대리 기관으로 북한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위임과 자체의 공증까지 담보하고 있어 저작권 사용 계약 당사자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또한 북한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창작의 경우에도 해당 창작기관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대리 행사함에 따라 남한의 이용자들은 저작권사무국만 통하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저작권 승계자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다. 저작권사무국이 설

---

20) 전영선, “남북 저작권교류의 현황과 전망,” 133~137쪽 참조. 전영선은 북한 저작물 유통의 난맥상으로 ① 저작권 주체의 문제, ② 저작권 승계자의 문제, ③ 북한 저작물 접근의 어려움, ④ 계약 이행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⑤ 분쟁해결 장치의 미비를 들고 있으나 저작권사무국의 설립 이후 이와 같은 난맥상이 해결됨에 따라 위의 부정적 요소들이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전영선의 분류를 기본으로 ‘남한 내 불법 북한저작물의 감소와 침해에 대한 처벌근거 가시화’와 ‘북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라는 내용을 추가해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립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기도 어려웠지만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러나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면서 저작권사무국이 저작권 승계자를 찾아냄은 물론 개개인별로 확인서까지 첨부해줌으로써 북한 저작권 승계자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계약 없이 남한에서 다양하게 출판되었던 사망한 ‘월북 작가의 작품들도 합법적인 출판의 계기를 마련’<sup>21)</sup>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이다.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에 북한 저작물의 이용은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대리인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저작권 대리 중개 권한을 가지지 못한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대리인의 개입에 따른 북한 저작자와 남한의 사용자 간의 입장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사무국의 설립 이후 남북 저작권 교류는 대리인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사라지고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다섯째, 남북 간 계약 이행에 대한 쌍방 간의 확인이다.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계약주체에 대한 명징한 확인을 통해 남한의 사용자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역시 남한 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여섯째, 북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 출판, 음악,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북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

21) 『서울신문』, “근대문학 거장 명예회복 …… 합법적 출판 길 열려, 월북 작가 10명 저작권 일괄위임 의미,” 2009년 2월 20일.

받은 저작물이 제작·유통됨에 따라 남한 내에서 북한 저작물의 가치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저작권사무국의 설립은 남북 저작권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는데도 남북 간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의 근절이다. 남한의 사용자들은 북한 저작물의 모든 공식 교류가 이제는 저작권사무국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남한 정부에서도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홍보와 침해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북한 저작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과제는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성과를 계승한 남북 간 저작권 관련 특별 협정 및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이다. 궁극적으로 저작권 교류는 남북한 당국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남북 간 저작권 교류와 관련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관계 당국과 저작권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저작권 분쟁을 관리하고 조정해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민간단체에서 진행해온 저작권 교류의 성과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 대리중개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북한 저작물을 관리할 신탁관리단체의 설립이다. 관계 당국은 법과 제도적인 틀의 마련과 분쟁의 해결을 맡고 민간단체는 실질적인 다양한 교류의 추진을 맡는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 과제는 북한 저작물의 남한 내 유통과 함께 남한 저작물의 북한에서의 제작 및 유통을 통한 온전한 의미의 남북 저작권 교류의 완성이다. 지금은 비록 남북 간 합법적 저작권 교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 저작물을 남한에서 활용한다는 일방적인 성격이 짙지만 점차 남한의 저작물이 북한에서도 이용 및 관리되어 진정한 의미의 남북 저작권 상호교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sup>22)</sup>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설립은 남북 저작권 교류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동시에 남북 간 쌍방향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남북 저작권 교류는 그 특성상 남북의 저작권자는 물론 대리중개인과 저작물 사용자를 비롯해 남북 정부 당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해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과거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방송언론사,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북한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무단 사용을 묵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 베른협약 가입, 저작권사무국 신설 등은 합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 저작권사무국 설립은 저작권자의 위임과 자체 공증까지 담보해

---

22) 남북 저작물 상호교류와 관리를 위해 남북 양자 간 저작료에 대한 차액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활발한 제작을 전제로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저작물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형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남북 간 저작권 교류의 한 단계 도약을 가져왔다.

북한의 저작권 사업을 총괄하고 남한을 포함해 대내외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저작권사무국의 신설은 소설, 동화, 고문헌 번역서 등의 출판물을 비롯해 조선중앙TV와 조선영화수출입사의 영상 같은 방송물, 소설 『황진이』의 각색권을 양도받아 제작한 영화 <황진이>,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를 포함한 10곡을 남한의 대중가수들이 부른 음반 『동인』, 북한 아나운서의 육성이 등장한 KTF 월드컵 CF, 백두산 전경을 담은 북한 인민기자의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는데도 남북 저작권 교류는 여전히 ‘남북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불법 사용’의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또한 남북 간 저작권 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저작권 협약 및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남북 간의 본격적인 저작권 교류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불법 사용으로 얼룩진 과거를 털어내고 북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르게 인식하고 남북 저작권 교류의 기틀을 정립해 남북 저작권 교류의 실질적인 진척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는 남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사업이자 경제교류 사업이다.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 남북교류의 성과는 북한 작가들로 하여금 남한 대중들의 반응에 관심을 보이게 만들고 있다. 또한 남한의 출판사, 영화사, 방송국이 북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이익을 취하게 되었음은 물론 북한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만들었다. 저작권 교류는 이미 동질성을 찾아가는 초보적인 남북관계를 넘어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단계 승화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지금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저작권 교류에 대한 성과와 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 10월 30일 / ■ 채택: 11월 23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로동신문』, “음모군들의 허튼 모략선전,” 2000년 3월 9일.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집』(평양: 법률출판사, 2006).  
『조선신보』, “출판물 계약 독점체결 소문은 모략,” 2000년 5월 31일.

### 2. 국내 자료

- 경문협, “저작권에 관한 포괄적 위임에 관한” 합의서, 2005년 12월 31일.  
\_\_\_\_\_, “조선중앙방송위원회 TV방송영상물에 대한 위임장,” 2006년 4월 17일.  
\_\_\_\_\_, “조선영화수출입사 TV방영 북한 영화에 대한 위임장,” 2006년 5월 2일.  
『대한매일』, “北 출판 도서물 南서 출간 추진,” 2000년 1월 22일.  
『서울신문』, “근대문학 거장 명예회복…… 합법적 출판 길 열려, 월북 작가 10명 저작권 일괄 위임 의미,” 2009년 2월 20일.  
『연합뉴스』, “北소설 개마고원 국내출판 어렵다,” 2009년 2월 9일.  
이재완,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통권 51권(가을호, 2000).  
이주철, “남북 영상·방송 교류의 현황과 전망,” 『남북 저작권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2005).  
전영선, “남북 저작권교류의 현황과 전망,”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봄호.  
조수선, “남북한 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에 관한 일 고찰,” 『2000 봄철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한국언론학회, 2000).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1).  
통일부, “남북 저작권교류 절차에 북한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보도자료, 2005년 4월 19일.  
KTF 광고 동영상, “생각을 이동하라. 북의 진실 편.”

# The Study on Change of Environment by Exchanging the Copyrigh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Establishing the Copyright Office of the D.P.R.K in Exclusive Charge of Copyright of North Korea

Shin, Hyun Wook(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the aspect of change by exchanging the copyrigh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fter the copyright bureau, the copyright offi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exclusive charge of copyright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as an affiliate of ministry in April, 2004.

As the copyright bureau was established, invested with exclusive right on the works in North Korea, it has solved the problems on the person concerned with the copyright, the person succeeded, and the subject of contract on group work or the work of organization, which is com-

mon in North Korea. It has brought the great change in exchanging copyrigh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copyright bureau was established, since international society has strengthened to protect copyright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copyright can bring actual profit into the North Korea has been spread. Before it was established, exchanging copyrigh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been proceeded in the limited field as publication and film. But after it was established, it has kept bringing the good result of exchanging copyrigh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publication such as novel, children's story, and version of ancient writing as well as broadcasting program of Chosun Central TV and film of Korea Film Export & Import Corporation. It also deals with the <HwangJinYi> which was produced with the right of dramatization of novel <HwangJinYi>, the record <Dongin> within the 10 songs sung by South Korean singers including the North Korean song <Bangapsumnida>, World Cup CF of KTF including the North Korean announcer's actual voice, and the North Korean reporter's pictures with the scenery in Baekdusan.

As exchanging copyrigh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business for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 based on the trade reciprocity, both of them can be benefited. The result of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establishing the copyright bureau has made the North Korean writers begin to pay attention to the reaction of South Korean. And it also helped publishing company, film company, and broadcasting company in South Korea get profit with North Korean

writer's works, and made the consistent research proceeded about the North Korean works. Since the copyright bureau was established, the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s in the upper stage to pursuit the both nation's profit above the basic stage to find out their commonality.

Keywords: Copyright, Copyright office of the D.P.R.K., Exchanging copyright, Trade reciprocity, Commonality